

총칙

● 취지

패스트 리테일링 코드 오브 컨덕트 (이하, 'CoC' 라 함)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며, 행동지침이 되는 것입니다.

● 적용범위

CoC는, ① 주식회사 패스트 리테일링 및 ② 주식회사 패스트 리테일링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% 를 넘는 의결권을 보유한 자회사 (이하, ① 및 ② 를 합쳐 '패스트 리테일링 그룹' 이라 함)의 이사, 집행임원 및 모든 종업원 (고용형태를 불문함. 이하, 동일), 그리고 ③ 패스트 리테일링 각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CoC 준수에 대해 합의한 당사자 및 그 임원과 종업원에게 적용됩니다.

● 운용상의 유의점, 책임

- 1)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 각 회사는 이사, 집행임원 및 종업원에 대하여 CoC에 반하는 업무 명령·업무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.
- 2) 패스트 리테일링 각 회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은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CoC를 준수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사내체제의 구축·정비 및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. 또한, 법령 위반을 포함한 CoC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,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·분석한 후, 적절하게 대응하며,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합니다.
- 3) 이사, 집행임원 및 종업원은 CoC에 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상사 또는 사내 상담창구 (패스트 리테일링 그룹 핫라인)에게 통보 또는 상담합니다.
- 4)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 각 회사는 통보자·상담자의 프라이버시 철저히 보호합니다. 또한 통보자·상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, 통보·상담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취급은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● 개정 및 절차

- 1) 개정
 - CoC는 사회, 사업활동 및 CoC 운용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검토·개정을 실시합니다.
- 2) 절차
 - CoC 기본원칙 및 총칙의 개폐는 CoC 위원장이 기안하고, 법무·컴플라이언스 담당 집행임원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시행합니다.
 - CoC 가이드라인의 개폐는 CoC 위원장이 기안하고, 법무·컴플라이언스 담당 집행임원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시행합니다.